

KB금융지주 부사장 대외비 자료유출 사건(이른바 ‘ISS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사법판단에 관한 검토

이 미 주*

目 次

- | | |
|--------------------------------|----------------------|
| I. 서 론 | IV. 박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판결 |
| II. ISS사건의 사실관계 및
금융감독원의 제재 | V.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 III. 박 전 부사장에 대한 행정판결 | VI. 맺음말 |

I. 서 론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위 규정과 관련한 사례로서 이른바 ‘ISS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ISS사건은 KB 금융지주 박동창 전 부사장(이하 ‘박 전 부사장’이라고 한다)이 2013. 3경 주주총회에서 ING생명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이 재선임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부정적

■ 투고일자 : 2022년 11월 19일, 심사일자 : 2022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12월 19일.

* 이미주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인 인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미국 사설 주주총회 안전 분석회사) 직원에게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넘긴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은 박 전 부사장의 위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요구 처분을 하여 박 전 부사장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박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박 전부사장을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박 전 부사장이 ISS에 넘긴 이사회 안전 중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은 열람가능한 자료로서 누설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위 형사판결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는 ISS사건과 관련한 소송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및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비밀 누설 행위의 의미와의 차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ISS 사건의 사실관계 및 금융감독원의 제재

박 전 부사장은 2010. 7. 13.부터 2013. 3. 18.까지 KB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KB금융지주'라 한다)의 최고전략책임자(CSO, Chief Strategy Officer)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동 안전이 2012. 12. 18. 이사회에서 특정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2013. 3. 22.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위 특정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여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KB금융의 정보가 포함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 문건 ①,②,③을 첨부하여 2013. 2. 27. 이를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직원에게 전달하였다.

KB금융지주 부사장 대외비 자료유출 사건(이른바 'ISS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사법판단에 관한 검토

<문건 ①②③의 내용>

구분	문건①	문건②	문건③
문건명	2012.11.14.자 KB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Project IRIS 관련 주요 고려사항 및 최종 협상추진(안)	2012.12.18.자 제13차 KB이사회 부의안건: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	2013. 1. KB생명의 지주 앞 사전협의자료: KB생명 증자 추진계획(안)
미공개 정보	- 설계사 수 대규모 감소에 대한 Protection 내용 - SPA상 Protection 내용 - 법률적 리스크 검토 - 밀리만 cash flow 추정 - 경상적 이익 추이 - 향후 3개년 이익 전망 - 그룹 연결손익 효과 추정 - Milliman 기업가치평가 - 가격/인수구조 변경 제시(안)	- 기업가치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검토 - 재무효과 추정 - 주식매매계약 주요 내용 - 향후 추진계획(안) - Milliman 기업가치평가 - BIS 비율 및 이중레버리지 비율 - ING생명 3개년 추정 재무제표	- RBC 하락 요인 - 증자 요청 규모 - 증자규모별 RBC 추이, ING생명 측 증자안 - 증자 시나리오 - RBC 비율 개선 추진 - 증자 가능금액 - 증자방법 - 증자 추진일정 - 금리민감도 영향, RBC 관리현황

금융감독원은 '13. 2. 22. ~ 3. 29. KB금융지주에 대하여 건전성, 법규준수 현황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지주 주주총회(2013. 3. 22.)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3. 2. 27. 대외유출이 엄격히 금지(Strictly Confidential)된 '2012년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정보를 ISS에 부당하게 제공하였고, 어윤대 전(前) 회장은 상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KB금융지주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미공개 정보 부당제공 등의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KB금융지주에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하여는 주의적 경고, 박 전 부회장에 대하여는 감봉 3월 조치를 요구하였다.¹⁾

박 전 부사장의 자료 제공 이후 ISS는 KB금융의 주주총회 전 정부 측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지 말 것을 기관투자가에게 권고한 바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를 두고 “이사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KB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 2013.11.11., 뉴스웨이,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상대 징계 취소 소송 승소”, 2015.9.11.자(검색일: 2022. 6. 2.)

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박 전 부사장이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내린 것이다.²⁾

Ⅲ. 박 전 부사장에 대한 행정판결

1. 1심(서울행정법원 2014. 8. 1. 선고 2013구합29841 판결)

- 박 전 부사장 패소

박 전 부사장이 이사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하고 자신과 반대된 의견을 개진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막으려고 미국 주총 안전 분석기관(ISS)에 미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영전략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행위이다. 동 행위는 이사회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미등기 임원의 권한 범위를 초월한 것이고, 금융지주 내부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은 물론, 반복되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왜곡돼 이사회 내에서 일부 경영진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게 되는 등 그 행위가 갖는 잠재적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로서는 박 전 부사장의 행위에 제재를 가해 그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크므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³⁾

2. 2심(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59285 판결)⁴⁾

- 박 전 부사장 승소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⁵⁾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경우 위 규정은 금융위

2) 금감원, 무리한 징계 잇따라 '부메랑', 시사신문(<http://www.sisasinmun.com>) 2015.9.14.자(검색일 : 2022. 5. 4.)

3) 1심판결 미공개로 신문기사를 참조함. “ISS사태 중징계’ 박동창 KB금융 전 부사장 패소, 연합뉴스, 2014. 8. 10. (검색일 : 2022. 5. 9.)

4) 박 전 부사장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3452 판결)

5)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원회 또는 피고(금융감독원)는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등'인 경우, 즉 금융지주회사가 행위주체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인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근거로 삼은 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그 위반행위의 주체를 '금융지주회사등'이 아닌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등'이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⁶⁾,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인 원고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견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개인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금융지주회사는 그 임직원이 법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주의 감독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와 위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미공개 정보 3건을 ISS에 부당 제공하였음을 그 처분사유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가사 주의감독의무 위반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감독의무 위반은 법 제57조 제1항의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 6)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은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에는 의무위반행위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등'인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고, 금융위원회와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3. 판결에 대한 검토

2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은 박 전 부사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 법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은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등’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행위주체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미공개 정보 3건을 ISS에 부당 제공하였다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것인데 동 조항은 위반행위의 주체를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지주회사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의 행위를 금융지주회사등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 없는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가사 처분사유를 미공개 정보 3건을 ISS에 부당 제공한 것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보더라도 주의감독의무 위반은 법 제57조 제1항의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대한 법원의 태도, 즉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는 관점에서 보면 합당한 판결이다. 하지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는 만큼 해당 법규가 요구하는 요건들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하여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과연 금융지주회사등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임·직원의 행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⁸⁾

7) 1심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2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8)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등이”가 “금융지주회사법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다)이”로 개정되어 2017. 10. 19.부터 시행중이다.(2017.4.18. 법률 제14891호)

IV. 박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판결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고단5710 판결)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의 위 문건 ①②③에 포함된 각 정보 제공행위가 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심은 피고인이 누설한 문건 3개는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

2. 2심 판결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노445 판결)

가. 요지

2심은 공소사실 적용법조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가11 결정에서 실시한 위 조항이 정한 '공개', '정보 또는 자료', '누설'의 의미를 참조하여, 문건 ② 정보는 공개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문건 ①③ 정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다.

나. 판시내용

1) 비공개성 여부

‘공개되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 공개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9) 3심(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613 판결)은 박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하면 문건②의 해당 자료는 2012. 12. 18.자 제13차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된 문건으로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고(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이와 같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처벌조항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누설 여부

‘누설’이란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공소외2에 제공함에 있어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판단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공소외 1 회사가 행한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누설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3. 형법 제127조의 ‘비밀’, ‘누설’개념과의 비교

금융지주회사법 외 다른 법률에서도 업무관련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해석론으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⁰⁾ 물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이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법 적용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비밀주체 내지 비밀관리자의 비밀유지 의사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정부 또는 어떤 정치세력의 단순한 정치적 이익이나 행정편의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이른바 가성비밀(假性秘密)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초래된다고 평가한다.¹¹⁾

1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KB금융지주 부사장 대외비 자료유출 사건(이른바 'ISS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사법판단에 관한 검토

또한 '누설'의 개념에 대한 판결 중에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로 현직 법관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영장재판 정보를 전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이상 이러한 정보전달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다¹²⁾.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누설의 상대방이 사전지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 정보의 제공, 전달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누설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함으로써 누설의 개념범주를 제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¹³⁾

V.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1.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청신청인 박 전 부사장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1.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제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청신청인 : 박동창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55 금융지주회사법위반

2.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가11 결정)

가. 결정 요지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70조 제1항 제8호 중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

11) 이태엽, 비밀의 보호와 헌법상 기본권 간의 조화, 인권과 정의, 2020.8., 95면

12)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2496판결

13) 송주용,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2022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공개'의 의미

사전적으로 '공개'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내놓음'을 뜻한다. 심판대상 조항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제9항 제1호 및 제45조의4 제1호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비은행지주회사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56조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전략과 실적, 리스크 관리 정책과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와 대주주 등의 내부거래 규제정책과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따라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공개'의 사전적 의미와 위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는 법령을 통한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자료 또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 또는 자료가 '공개되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 공개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을 통해 각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청법원은 '공개'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면서, '적

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것'을 '군사기밀의 공개'라고 정의한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2호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미공개중요정보'로 정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개'의 방법을 법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목적상 규정된 방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만 '공개'된 자료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이는 정의된 방법에 의한 공개가 아닌 한 공개된 자료로 보지 않는 것으로, '공개'의 개념을 일반적 개념과 다르게 좁히거나 확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방법이다. 따라서 공개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라는 단어가 불분명한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누설이 금지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내용상 제한은 없다. 제청법원은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문언상 특별한 범위 제한이 없는 이상 모든 정보 또는 자료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다른 입법례와 같이 '영업상 비밀', '중요한 정보' 혹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 또는 자료 일체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금융 산업의 공정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및 자료가 생성되고 그 유용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영업상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 일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내용의 정보 또는 자료로 한정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해석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VI. 맺음말

ISS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형사판결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실시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① ‘공개되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개별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 공개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② ‘누설’이란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SS사건 이외에도 업무 관련자의 비밀 누설행위는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비밀의 의미에 대하여도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 해석되는데, 이는 개별법의 취지, 규제목적 등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행정판결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박 전부사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소되었는데, 법원이 ‘금융지주회사등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임·직원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앞서 살펴본 비교개념으로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가 명시적으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석론으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과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과 형사법원이 일응 모순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입법으로 명확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판례가 가지는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기능과 본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입법의 공백을 메우지 한 것이 아쉽다. 향후 유사 사건의 발생할 경우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KB금융지주 부사장 대외비 자료유출 사건(이른바 'ISS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사법판단에 관한 검토

참 고 자 료

송주용,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2022

이태엽, 비밀의 보호와 헌법상 기본권 간의 조화, 인권과 정의, 2020. 8.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KB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 2013. 11. 11.

시사신문, “금감원, 무리한 징계 잇따라 ‘부메랑’”, 2015. 9. 14.자(검색일 : 2022. 5. 4.)

뉴스웨이,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상대 징계 취소 소송 승소”, 2015. 9. 11. 자(검색일 : 2022. 6. 2.)

연합뉴스, “‘ISS사태 중징계’ 박동창 KB금융 전 부사장 패소”, 2014. 8. 10.자(검색일 : 2022. 5. 9.)

<국문초록>

ISS사건에 관한 형사판결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실시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행정판결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는 임·직원 개인의 일탈행위까지 금융지주회사등의 행위로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금융지주회사등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임·직원의 행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주제어 :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 금융지주회사등, 침익적 행정처분, 예측가능성

KB금융지주 부사장 대외비 자료유출 사건(이른바 'ISS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사법판단에 관한 검토

<Abstract>

A review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measures and judicial judgments on the leakage of confidential data by KB Financial Group Vice President (so-called "ISS Case")

Lee, Mi Joo

The criminal judgment on the ISS case is meaningful as the first case of specifying the meaning of leaking undisclosed information or data under Article 48-3 (2)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However, in the case of an administrative judgment, it was judged that even deviation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hich cannot be regarded as act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ould not be interpreted as action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t is regrettable that it did not provide predictability for the legal provisions that are the basi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ause there is no explanation for what the action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can be regarded as action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Keywords : undisclosed information or data, leak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vas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predictability for the legal provisions.

